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17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53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117호)

가. 발 의 자 : 황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4. 6.

다. 회부연월일 : 2026. 4. 7.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653호)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6. 30.

다.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7호)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단축되어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하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을

계산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오랜 기간 변동 없이 3년이며,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로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3항 및 제34조의7제3항).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

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다보니,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 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들은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김선교의원안에서는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도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황희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① (생략)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u>3년간</u>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 ----- ----- ----- ----- <u>2년간</u> ----- ----- ----- ----- -----.	② ----- ----- ----- ----- ----- <u>2년간</u> ----- ----- ----- ----- -----.
③ 제1항에 따라 공	③ -----	③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원할 경우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로 편입²⁾되어 3년간 복무해야 하고, 동 복무기간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3주)을 산입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복무기간과 군사교육소집기간 미산입은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개정안은 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³⁾되어 온 반면에,

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기간은 1979년 제도 시행 시부터 변동없이 유지되어⁴⁾ 상대적으로 장기인 복무기간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지원을 및 복무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취지를 가짐.⁵⁾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무장교를 우선 선발하고, 잔여 인원을 공보의 등으로 편입
- 3) 2020.6.2.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육군기준)
- 4) 1979년 공중보건 의사 제도 시행 시부터 복무기간 3년 유지, 1999년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제도 시행 시부터 복무기간 3년 유지, 공익법무관은 1995년부터, 공중방역수의사는 2007년부터 3년 유지
- 5) 참고로 동 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0496,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2025.5.14.)됨.

- 공중보건직의사의 복무인원 감소와 그 주요 원인이 현역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중보건직의사의 복무기간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구분	의안번호	발의의원	단축기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00	한지아의원	2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2	정동만의원	2년 2개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81	서영석의원	2년

- 공중보건직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최근 연도별 공중보건직의사의 신규 편입현황을 보면, 2019년에 1,211명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743명으로 급감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중보건직의사의 복무인원이 2019년 3,539명에서 2025년 2,548명으로 천 여명 가량 감소한 상황임. 이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병 선호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연도별 공중보건직의사 신규 편입 현황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211	1,318	1,035	1,050	1,114	716	743

<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복무 현황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공중보건의사	3,539	3,489	3,524	3,365	3,172	2,852	2,548

□ 특히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59.5%), 2026년 1,023개소(82.1%)로 집계됐고,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인 1,083개소에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편입 지원율이 제고되어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복무기간을 줄여 고숙련 의료 서비스를 사회에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보충역 및 장교 등의 복무기간 비교 >

구분	복무기간 (교육기간)	구분	복무기간 (교육기간)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자격: 의사) 공익법무관(자격: 변호사) 공중방역수의사(자격: 수의사)	3년 (3주)	군의원(자격: 의사)	3년 (6주)
		수의장교(자격: 수의사)	(9주)
		법무장교(자격: 변호사)	3년 (16주)
전문연구요원	3년 (3주)	학사장교	2년 4개월 (12주)
		육군 ROTC	

□ 그럼에도 국방부 및 병무청은 공보의 등의 복무기간 단축 및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은 의무장교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성, 복무기간 단축의 불가역성, 선발 가능 인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복무기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법무부는 공보의 등의 복무기간 단축은 타 보충역 및 현역장교와의 형평성, 병역자원 현황·추세, 전문성 있는 병역미필 자원의 효율적·공익적 활용, 병역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병역제도의 의무복무기간만 축소하는 방안은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등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현재 3주로 하고 있음.

「병역법」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현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경우 실시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현행 법 제34조제3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3항6)에 따라 3년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 등은 현역장교인 군의관, 법무장교 및 수의장교와 동일한 자격요건·선발절차를 통해 유사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역장교와 마찬가지로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구 분	군사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여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미산입
군의관, 법무장교, 수의장교	미산입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산입

□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사유와 마찬가지로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실질적으

6)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로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유사한 편입 요건(전문면허 보유 여부) 및 복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군의관 등 의무장교의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타 보충역, 의무장교의 산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임⁷⁾.

- 참고로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면서 공중보건의사는 미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또한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2019헌마472, '20.9.24.)한 바 있음.

<판결요지>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가 같은 보충역으로서, 군사교육소집기간 및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한 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취지, 신분, 군사교육소집시기, 병역의무 이행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 한편, 황희의원안은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만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개정안 부칙 제5조제1항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고, 김선교의원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7) 의무장교의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22181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2219624)도 함께 발의됨.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도 함께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시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부 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308